

대구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6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652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5. 11 선고 2021가소21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태(소송구조)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23. 3. 22.

판결 선고 2023. 4. 19.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5. 11. 선고 2021가소218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5. 25. 경남 울주군(1997. 7. 15. 울산광역시가 권리승계)과, 울산 울주군 C 대 235.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다가, 2009. 4. 23.

울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택지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D 앞으로 '근저당권자 D,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4.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차용금증서

일금 60,000,000원정

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하고 아래 각항을 이행하기로 본 증서를 제출함

저당물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2009. 4. 27.

채무자 : 원고

연대보증인 : 피고

채권자 : D

라. 피고는 2009. 4.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 확인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수령 : 42,000,000원

장포 : 5,000,000원

경비 : 2,700,000원

$34,300,000원 \div 2 = 17,150,000원$

E 내용 확인

피고

2009. 4. 2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전을 차용하면 피고가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하고, 그 곳에서 수령할 공사대금을 1/2씩 분배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D으로부터 42,000,000원을 수령한 후 그 중 소개비 및 접대비 7,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300,000원(= 42,000,000원 - 7,700,000원) 중 17,150,000원만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7,15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축공사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처음부터 이 사건 돈을 수령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17,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차용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돈을 피고가 진행하는 이 사건 건축공사에 사용한 다음 그 곳에서 수령할 공사대금을 분배하자'고 약정한 다음 이 사건 돈을 D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돈을 이 사건 건축공사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F는 2010. 3.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기록이 폐기되어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돈을 D으로부터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남현

판사정세영

판사조세진